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7
----------	-----

2025. 6. 10.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10. 운영위원장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0.)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의 친선결연을 통하여 양 의회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문화, 민간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국외의회와의 친선결연 체결

나. 친선결연 협약서(안)

## 4. 제안경위 및 추진사항

- 2019. 2. 22 :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 2024. 11. 4 : 강남구의회 향올구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협정서 재확인

○ 2025. 4. 17 : 강남구의회 항올구 방문하여 의향서 전달 및 친선결연 (MOU)체결 논의

○ 2025. 6. 10 : 구의회 의상단 회의에서 친선결연 추진 결정

## 5. 친선결연의 필요성 및 사전 검토사항

### 가. 친선결연의 필요성

- 국제 지방의회 간 우호협력 및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의정,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민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유대감 증진
-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상호 교환을 통해 양 의회의 자치 역량 강화

### 나. 사전 검토 사항

조례 기준 항목	검토 내용
1. 인구, 면적,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강남구는 인구 약 55만 명, 도시형 자치구로서 재정자립도와 행정역량이 매우 높음. 항올구는 울란바토르시 내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몽골의 수도권에 위치하며 인구 약 26만 명이고, 도시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는 지역임. 상호간 도시형 자치단체로서의 비교 및 교류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
2. 산업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강남구는 의료관광, ICT, 문화산업이 강점이며, 항올구는 광업, 무역, 주거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도시임. 양 지역은 산업구조가 다르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이 가능함.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양 기관은 각각의 도시 의회로서 주민 대표기관이며, 상호 존중과 우호적 파트너십 기반의 외교적·의정적 교류가 가능함. 국제 지방외교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협력 관계 형성이 기대됨.

조례 기준 항목	검토 내용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강남구는 행정·정책 우수사례 공유, 의료·관광 산업 연계 홍보가 가능하며, 항올구는 문화·관광·산업 관련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강남구의 국제 홍보 플랫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상호 실익 확보 가능함.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몽골과 한국은 오랜 문화적 교류 역사를 공유하며, 항올구는 수도 울란바토르 내 중심지역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이력이 있음.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교류 필요성과 문화적 유사성 기반의 협력 타당성이 존재함.
6.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정기적 방문·초청, 양 의회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가 가능함. 의회 차원의 교류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화된 협력체계도 구축 가능함.

#### 다. 종합의견

강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은 도시 간의 행정·산업·문화 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실익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함. 본 조례 기준에 따른 타당성, 적정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 체결 추진이 바람직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끝.

#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의안 번호	547
----------	-----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의 친선결연을 통하여 양 의회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문화, 민간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2. 주요내용

-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국외의회와의 친선결연 체결
- 친선결연 협약서(안)

## 3. 제안경위 및 추진사항

- 2019. 2. 22 :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 2024. 11. 4 : 강남구의회 향올구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협정서 재확인
- 2025. 4. 17 : 강남구의회 향올구 방문하여 의향서 전달 및 친선결연 (MOU)체결 논의
- 2025. 6. 10 : 구의회 의상단 회의에서 친선결연 추진 결정

## 4. 친선결연의 필요성

- 국제 지방의회 간 우호협력 및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의정,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민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유대감 증진
-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상호 교환을 통해 양 의회의 자치역량 강화

## 5. 기대효과

- 양 지방의회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적 우호 관계 심화
- 문화 및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벤치마킹 기회 확대
- 강남구와 향올구 간 도시 브랜드 가치 및 위상 제고

## 6. 향후계획

-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친선결연 추진 계획 수립
- 친선결연 협약서(안)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조율
- 친선결연 협약식 개최를 위한 사전 실무 협의 진행
- 강남구 방문 기간 중 친선결연 협약식 체결

## 7. 협약서(안) : 붙임

## - 강남구의회 · 향올구시민대표회의 -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친선결연 협약서(안)

“강남구의회”와 “향올구시민대표회의”(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의 이익 추구하고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2.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 방안 협의
3.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4.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석)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서의 변경 및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종료 후에도 같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강남구의회  
이 호 귀



항을구시민대표회의장  
Bat-Orgil.Ch